

| | |
|---|--|
| <p>하였고, 일반계 고등학생 직업훈련기관 위탁 교육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p> <p>이외에도 고교체제 개편에 따른 工業高等學校 收容施設 확충비로 70억원을 책정한 것을 비롯하여, 산업인력 배양을 위해 實業系高等學生 奖學金 24억원, 기계공동 실습소 운영 등에 1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p> <p>다음은 私立學校 財政支援 부문이 되겠습니다.</p> <p>우리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私學에 대하여 財政支援을 확대하여 私學의 自律性과 自主性이伸張되도록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총 2,200억원이 지원되도록 하였는 바, 그 내용은 中學校는 113개교에 871억원, 高等學校는 186개교에 1,290억원 등 재정결합 보조금으로 모두 2,161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실난방개선사업 등 教育環境改善事業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p> <p>產業體 特別學級에 10억원이 지원되는 것을 비롯하여 교육용 컴퓨터 보급과 상업고등학교 전산설 운영비로 5억원, 기타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운영비 등으로 5억원이 각각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p> <p>다음은 教育의 部門別 均衡發展이 되겠습니다.</p> <p>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教育의 部門別 均衡發展의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p> <p>따라서 教育의 部門間 均衡發展維持를 위해 771억원을 반영하였는바, 그 내용은 幼兒education 振興을 위해 公立幼稚園 運營Fee로 16억원, 公立幼稚園 New設Fee로 1억원, 幼稚園教員研修Fee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特殊學校 New設Fee로 56억원, 特殊schools 運營Fee로 162억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p> <p>國民schools 給食擴大를 위해 급식학교 신설에 59억원, 급식학교 운영에 66억원, 초·중학생 결식학생 중식지원비로 8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p> <p>이외에도 교원연수원 이전 신축 등 教育支</p> | <p>援機關 施設擴充에 85억원, 체육활동 및 학생 수련시설 운영에 37억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 教職員厚生福祉 증진을 위해 263억원이 책정되었으며, 교육행정 전산망 구축, 학부모 교육과 평생 교육 분야 등에 17억원이 배정되도록 하였습니다.</p> <p>한편 전체 투자수요는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95년도 세출예산의 경우 인건비의 높은 증가율과 공·사립학교 현장 교육비의 증액지원, 실업교육의 확충 등 고정적인 지출경비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投資可用財源이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p> <p>따라서 사업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총투자 소요액 중 '95년도에 필요한 금액만을 투자하고 부족액은 '96年度에 債還 할 計劃으로 둔촌공고 신축비 20억원, 교원연수원 이전 신축비 29억원, 한성과학고 기숙사 신축비 12억원, 서부교육청 청사신축비로 20억원 등 모두 81억원의債務負擔行爲를 하도록 하였습니다.</p> <p>이상과 같이 1995年度 서울特別市 教育費特別會計 豫算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개개 사업의 具體的인 事項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答辯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p> <p>○委員長廉東秀企劃管理室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p> <p>○專門委員尹炳國 먼저 1995年度 서울市豫算案에 대한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p> <p>(報告)</p> <p>서울시에서는 아래적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해 예산안의 규모는 총계 규모로 7조 7,125억 2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에 비해 3.9%인 3,115억 3천 1백만원이 감소한 액수입니다.</p> |
|---|--|

| | |
|--|---|
| <p>니다.</p> <p>이중 일반회계는 3조 8,010억 원으로서 전년도 3조 4,254억 8천 3백만원에 비해 11.0%가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조 9,115억 2백만원으로서 전년도의 4조 5,985억 5천 만원에 비해 14.9%가 감액된 규모입니다.</p> <p>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비와 교통사업비에서 각각 200억원이 늘어나 당초 예산의 1%인 400억원 증액 수정되었습니다.</p> <p>이렇게 되면 '95년도 서울시 예산 규모는 총 7조 7,525억 2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3.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p> <p>자세한 증감내용은 검토보고서 앞부분을 참고하시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 <p>먼저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9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조 8,010억 원으로 '94년도 최종예산대비 11.0%가 증액된 수준이며, 내년도 정부의 예산증가율 15.9%와 비교하면 4.9%가 낮은 증가율입니다.</p> <p>또 전년도 예산증가율 6.9%에 비해서는 4.1%가 높아졌습니다. 예산 증가율과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은 먼저, 수치상으로 나타난 증가율이나 외형적인 전체규모로 판단하기보다는, 시민이 시로부터 제공받는 공적서비스의 질과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세입세외내에서 재원배분이 얼마나, 어느 정도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또, '95년도 중에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문제와도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p> <p>즉, '95년도 중에 추가재원을 사용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면 당초예산규모는 확대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p> <p>그러므로, 추경예산의 확대편성을 전제로 하여 당초 예산규모를 축소하여 편성하는 것은 올바른 재정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p> | <p>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일반적으로 예산심의의 가장 1차적인 접근대상은 전체 예산규모와 증가율에 두어져야 한다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즉, 시민이 부담하는 부담규모와 부담으로써 얻어지는 공적서비스와의 조화에 예산심의의 1차적인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p> <p>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방의회에서의 예산심의는 또 예산심의에 있어서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따지는 문제는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대원칙에 묶여 그만큼 의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예산규모의 신축적 조정은 불가능한 것이어서, 결국 예산심의의 방향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등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p> <p>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제출과 관련한 의견입니다.</p> <p>수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를 두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수정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가 당초예산에서 400억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되어 추가된 사업내용을 보면, 교통사업부분(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 고출력 냉방화 사업, 버스전용차선 추가설치, 교통관리 지능화 사업, 여의도 일방통행제 사업" 등에 계상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이와 같은 수정예산안에서 추가로 반영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수정예산안 제출사유에 해당하는가와 제출시기가 적정한가 하는 문제입니다.</p> <p>동 사업들은 기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주종이며,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제출시기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안 제출이후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상임위 예비심사가 종료된 후에 제출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p> |
|--|---|

| | |
|---|--|
| <p>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참고로 정부는 수정예산을 역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두차례 걸쳐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요건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이와 같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신중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재정운용이라 판단됩니다.</p> <p>다음에는 경직성경비 증가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의견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지출규모의 조정이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법정부담금, 인건비, 관서운영기본경상비 등 경직성경비의 비중은 전체 예산규모의 44.6%를 차지하여 전년도에 이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p> <p>따라서 서울시의 재정집행상 실질적인 가용재원을 판단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필수적 경비와 지하철, 도시고속도로건설사업 등 주요 계속사업을 제외하면 신규투자가 가능한 재원은 불과 전체예산의 3.6%에 불과할 뿐입니다.</p> <p>이러한 경향은 우리 서울시가 처한 특수한 재정적인 여건과 제도상의 제약에 비추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속에서 시재정기능을 상대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경직성 경비의 구성비를 얼마나, 어떻게 줄여나가는 것이 서울시 재정운용상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p> <p>다음은 예산의 제로베이스제 운영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제로베이스 예산제도(ZBB)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에 구애되지 않고 영(zero)에서 출발하여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채택된 프로그램에 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제로베이스 예산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경직성의 타파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p> <p>'95년도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함께 있어서도 제로베이스 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상당폭 증가했음에도 관서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p> | <p>1.6%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은 관행적인 점증적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집행부의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재원배분의지를 엿볼 수 있는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p> <p>다만, 이와 관련한 의견으로는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는 예산의 단순한 감축편성에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내용, 타당성, 규모, 경제성 등과 사업간 우선순위 등 모든 면에서 제로상태에서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사업 전반에 대하여 집행함으로써 재원배분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p> <p>다음에는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관련한 의견입니다.</p> <p>'95년도에 처음으로 채택된 계속비제도로 운영되는 예산은 가양대교 건설, 남산장식시설보상 및 일원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등 총 3건에 '95년도 연부액은 497억 3천만원입니다.</p> <p>잘 아시다시피 계속비제도는 단년도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완공에 여러 해가 소요되는 대단위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을 그 총액, 기간, 연부액 등을 적산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속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p> <p>계속비제도에 대해서는 전년도 우리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차례 강조한 바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동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p> <p>국민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의 역할과 규모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재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은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사업기간도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p> |
|---|--|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도시철도건설, 도시고속화도로건설, 자원회수시설 등의 중장기 대형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성격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계속비로 책정함으로써 그 소요자금을 능률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계속성 확보는 물론, 중요 시책사업의 투자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명시이월비는 사고이월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지방재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함으로써 예산의 이월에 합법성을 부여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비 역시 '95년도 예산에서 처음으로 채택하고 있는 회계제도로서 “도봉산 환승주차장 및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1건에 44억 2천 8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즉, '95년도에 동 사업의 추진이 어떤 이유로 지연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다음년도로 예산의 이월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시이월비 제도 도입 또한 그동안 관행적인 사고이월 남발 등으로 지적되어 오던 불합리한 회계운영에 있어서 진일보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비로 책정된 동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에는 기금과 관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기금의 설치·운용이 예산의 부속서류로써 의회에 제출키만 하면 되었으나,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써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5년도의 서울시 기금현황을 보면 총 11개 기금에 기금합계액은 총 5,637억 3천 6백만 원에 이릅니다. 이 규모는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15% 수준에 육박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그 규모의 방대성과 사회적·경제적 기능으로 볼 때 예산에 못지 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종 기금은 그 대부분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등 의존재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또 일부 기금의 경우는 그 활용도에 있어서도 그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시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조건 등의 이유로 사정되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설정이어서 예산과 분리할 실익이 없는 기금은 일반회계로 흡수하여 운영하든지,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용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의회의 의결대상이 된 기금의 운용은 예산과는 다르게 정적인 모습이 아닌 기금의 집행·관리 등과 관련한 동적인 측면입니다.

따라서 기금에 대한 의회의 통제는 예산의 심의·의결과 같은 1회적인 과정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1회계년도 내에 걸쳐서 기금의 운용상황 전반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는 세입예산 중 세계잉여금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전년도 세계잉여금 3,00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전년대비 300%에 해당하는 규모로 '94년도 시세징수실적의 호조와 예산미집행액이 다소 늘어나리라는 전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하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규정이긴 하나 이 규정에 의한다면 세

| | |
|--|--|
| <p>계영여금은 각종 악성부채 등에 우선 변제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p> <p>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재원이 절대 부족한 서울의 재정여건상, 또 시급한 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하철건설사업 등 긴급 한 현안사업을 위해 세계잉여금의 세출예산편성이 불가피손 치더라도, 늘어만 가는 서울시 채무증가 상황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전년도의 세계잉여금 전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은 재정활동 확대에만 염두에 둔 재정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p> <p>마지막으로 예비비 예산과 관련한 의견입니다.</p> <p>'95년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비비 예산은 총 860억 4천 4백만원으로, 이는 총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년대비 39.2%가 증가한 것입니다. 재정활동의 확대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과 내년도 분구 대비 등 예비비의 증가요인도 예상되지만, 예산규모의 1.3%로 계상토록 되어 있는 예산편성 지침상의 규정에 비추어 다소 과다한 규모의 예비비 책정이라고 생각됩니다.</p> <p>또 예비비는 그 성격상 집행부가 이를 지출하고 사후에 의회가 승인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책정하여야 하며, 그 사용과 관리에 있어서도 엄격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참고로 '93년도 예비비 사용실적은 예비비 예산액 286억원의 24.3%인 6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p> <p>이상으로 '95년도 서울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p> <p>이어서 教育廳 豫算案에 대해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p> <p>(報 告)</p> <p>먼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9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p> | <p>463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가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크게 국고수입, 전입금, 자체수입으로 나누어져 있는바, 국고수입은 1조 3,127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 증액되었으며, 전입금 수입은 4,121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 감액되고, 자체수입은 3,214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7.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p> <p>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소요내역을 보면, 인건비 비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여 총세출예산의 66.4%인 1조 3,596억 8,500만원이 지출되며, 전년도 대비 11.1%가 증액되었습니다.</p> <p>학교운영비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11.9%가 증가된 1,386억 1,400만원이며, 사학지원비는 전년대비 0.1% 증가된 2,476억 2,60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21.6%가 감액된 2,330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p> <p>그 밖의 교육사업비는 전년대비 6.4%가 감액된 428억 5,400만원, 교육행정비는 전년도 대비 11.1% 증액된 180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대비 0.3%인 62억 5,2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9.4%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p> <p>먼저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구조와 관련한 의견입니다.</p> <p>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의 재원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교부금, 양여금 및 보조금 등 국고수입이 64.2%를 차지하고, 중등교원봉급, 담배소비세, 도서관운영비 등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 오는 전입금 수입이 20.1%, 입학금 및 수업료, 전년도 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이 15.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국고 등 의존수입이 8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체수입은 15.7%에 불과해 교육자치기반이 매우 취약한 설정입니다.</p> <p>이러한 취약한 재정구조는 물론 법적 또는 제도적 구조에 기인된 것이며, 특히 자체수입의 주종을 구성하는 중·고등학교 입학금</p> |
|--|--|